

GANGJIN 

Web Contents



목차

목차	2
기초생활수급	3
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개요	3
급여종류 및 지원액	3
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	3

기초생활수급	긴급복지지원	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	의료급여
지역자활센터 ☎	자원봉사센터	푸드뱅크	

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개요

- 지원대상: 근로능력 여부·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 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
- 신청인: 수급(권)자·친족·기타 관계인, 공무원 직권신청(동의필요)
- 신청장소: 읍·면사무소 주민복지팀
- 신청기간: 연중
 - ※수급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
 - 고소득(연1억 세전) 고재산(9억, 금융재산 제외) 부양의무자 있는 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
- 선정기준: 소득인정액 기준 + 부양의무자 기준 ※ 교육급여,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하지 않음
- 교육급여: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·수업료·교과서대·부교재비·학용품비 지급
- 해산급여: 수급자가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지급
- 장제급여: 수급자가 사망 시 1인당 80만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
- 기타 문의사항: 읍·면사무소 주민복지팀, 군청 주민복지과 430-3182~5

◎ 급여종류 및 지원액

구분	선정기준	지원내용
생계급여수급자	기준 중위소득 30%	생계급여액 = 중위소득 30% 수준 - 소득인정액
의료급여수급자	기준 중위소득 40%	근로능력유무에 따라 1종, 2종으로 구분하여 지원
주거급여수급자	기준 중위소득 47%	임차가구: 임차료 지급(상한선 기준) 자가가구: 주택 개보수 지원
교육급여수급자& 차상위	기준 중위소득 50%	입학금, 수업료, 교과서대, 부교재비, 학용품비등 교육활동지원비

◎ 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

구분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	7인가구
금액 (원/월)	2,077,892	3,456,155	4,434,816	5,400,964	6,330,688	7,227,981	8,107,515

- 조사내용: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·재산, 부양의무자 유무, 부양능력 실제 부양여부, 수급권자의 근로능력·취업상태·자활욕구·주택현황(LH시행) 등
- 신청 시 제출서류

-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(변경) 신청서
-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, 임대차계약서(해당자 만) 등
- 기타 문의사항 : 읍.면사무소 주민복지팀, 군청 주민복지과 430-3182~5

COPYRIGHT © GANGJIN-GUN. ALL RIGHT
RESERVED.

GANGJIN

Web Contents

